

나. 피고 2, 3, 4, 5 외 원고는 2016 타당 1367의 채무자들입니다

2. 항소심 판결에 대한 집행문 없는 불법경매

2015나 30994 (부소 임대차보증금 반환등), 2015나 31003 (변소. 민테리이철가등  
가짜번트) {압제 2호층 판결문 정본}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항소심에 대한 집행문이 없습니다

원심판결문과 항소심판결문은 상이합니다

경매이계 사무관 양선영과 박정준 사법보좌관이 항소심에 의한 집행문이  
없고 원심판결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원고 전명신에 의한 473,200,000 원 변제공탁

사법보좌관 박정준의 2017. 12. 14 매각허가 결정이 되어 {압제 3호층  
매각허가결정문}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2. 28. 473,200,000  
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집행비용을 산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해 주지 않  
도록하여 2018. 1. 3 320 만원을 추가공탁하여 총 473,200,000 원입니다  
{압제 4호층, 압제 5호층 금전공탁서 (변제)}

4.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민사집행규칙 제 50조  
③ 항의 3을 위배하였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 50조 [집행정지 서류등의 제출시기]

① 법 제 49조 제 1호 제 2호, 또는 제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